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청이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기간 변경시 이를 해당 설계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공제)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 방지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기간 등 변경에 대한 발주청의 통지의무 근거 마련

- 공사기간 변경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통지의무 조항 신설

나. 건진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28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6, 3567)